

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길병천

육군종합행정학교 헌병학처 수사학과 과학수사실

The Study of Death during Military Services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Byung Cheon Gil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Division of Military Polic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School, ROK Army*

Abstract - The necessity for the investigation of death occurred in military services has no differences to the death of civilians. But the death of military service members under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Korea has special considerations because of hard accessibility by the bereaved family and closed environment of the army. The analysis of the death occurred during military service was carried out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to prevent the death was proposed to prevent the declination of fighting spirit and efficiency and also to restore the solid support by the people.

The deaths in the period 1995~2006 were 330 persons in 1995, 359 persons in 1996 and were decreased to 135 persons in 2006. The death caused by safety accidents including vehicle accident, drowning, fall were 56% and by military crimes including suicide, arms, homicide were 44%.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108 persons in 1995 and were decreased to 79 persons in 2006.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decreased constantly, but the ratio of suicide to death were increased, so the suicid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e autopsy ratio was increased to 51.5% in 2005 and wa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ratio for civilians. The main reasons of complaints by the bereaved family were for regaining reputation, death in harness and reinvestigation of death.

The proposals for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were as follows. The unnatural deaths including the obvious accidental deaths and homicides have to be defined by the rules. The human resources to perform the autopsy can be supported by the forensic pathologists from medical school. The

special training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crime scene investigator. To regain the impaired reputation from the suicide and to support the bereaved family has to be discussed by the government.

Keywords : Military service, Death investigation system, Unnatural death, Autopsy

I. 서론

군에서의 발생한 사망에 대한 조사도 일반인의 사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군시설의 접근 난이성과 군기밀 보호를 위한 폐쇄성 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현 징집체제에서 군인의 사망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군내에서 장병이 사망하게 되면 군 전투력에 발휘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기 질서를 문란시키며,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다. 군사 보안상의 이유와 계급 조직사회인 지휘체계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유가족의 접근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회의 불신이 만연하여 군내에서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와 법의군의관의 부검결과를 믿지 못하고, 유가족들은 사망원인에 대한 재수사와 국립묘지의 안장과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민원을 끊임 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시체는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군내에서 장병이 사망하였을 때, 군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당해 사망사건에 의혹은 없는지, 범죄와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장병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사망의 실체를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실태, 사망사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의 실태, 군내에서 실시된 부검에 대한 현황, 그리고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유가족의 민원제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검시제도와 군내 검시제도를 비교하여 법률상 차이점과 검시기관의 차이점과 검

시기관의 인적 자원구성을 검토함으로써 군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과 사건재구성, 유가족의 민원제기 처리 등에 필수적인 부검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으로 군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하나의 표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입법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방부 인사국과 법무관리관실 자료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사고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한 안전사고(교통, 항공기,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와 군기사고(자살 총기, 폭행, 기타)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 실태와 군내의 부검 실시현황을 알아보고, 군기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부소속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원제기 현황과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군내 변사체 부검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간한 ‘과학수사 연보(제5~8호)’의 법의학과에서 취급한 ‘부검, 검안, 조직 및 혈흔 기타’ 등 통계를 인용하여 연도별, 유형별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내 변사체 검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군내 변사체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금까지 발표된 검시제도와 관련된 각종 논문과 저서 및 판례 등 입수 가능한 모든 문헌과 국방부 훈령 및 육군본부 지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법의학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년간의 수사실무 경험 및 교육기관의 강의를 통하여 연구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Ⅲ. 결 과

1. 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

1. 군내 사망사고

군내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1995년에 330명, 1996년에 350명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35명에 이르렀다(표 1). 군내에서는 사망사고를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교통(차량)사고, 항공기사고, 폭발물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및 기타 사고를, 후자인 군기사고는 자살, 총기강력사고, 폭행사고 및 기타 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사망사고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평균 117명, 56%)가 군기사고에 의한 사망자(평균 91명, 44%)보다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차량)사고 사망자(평균 54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군기사고의 경우에는 자살 사망자(평균 84명, 9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와 자살이 대부분(평균 13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98년과 1999년은 자살자 수가 증가하였고(각각 102명, 101명), 교통사고의 경우도 감소(각각 43명, 62명)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7년 말 IMF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이용 감소로 차량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개인부채 증가와 가정환경 등으로 자살동기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2002년에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이라는 훈령을 마련하였다. 이 훈령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처리로 유가

족들의 은폐, 조작의혹 등 민원제기에 의한 대군 불신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현장보존으로 수사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용한 과학수사 시스템에 의한 수사를 실시토록 하며,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토록 하고 있다.

2006년 4월 1일부터는 육군수사단 소속의 지구수사대를 창설하여, 육군부대의 사망사고 발생시에 각 군을 지원하는 1, 2, 3, 5 수사대 현장감식팀을 신속히 출동시켜 초동 수사로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일사불란하게 사건처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유가족들은 사망사고 처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법의궁의관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다소 불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2. 군내 자살사고 특징 분석

가. 발생현황

군내에서의 자살사고는 비전투 손실을 초래하고 군 전체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 중 하나로 자살 처리되는 건수는 매년 30~40%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보면(표 2), 2000년 이후 점차로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65명으로서 12년 평균(84명)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육군에서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로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표 3), 이것은 타국 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 2007년도에는 자살사고를 20% 줄이기 위해 「인명중시 부대관리 연구 TF」를 구성하여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1. 군내 전체 사망사고 발생현황¹⁾

연도	계	안전사고 (56%)								군기사고 (44%): 범죄사건			
		소계	교통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2006	135	54	27	3	3	7		14	81	79	1		1
2005	128	54	22	4	1	6	11	9	74	65	8	1	
2004	134	65	27	6	3	4	13	11	69	66		1	2
2003	150	73	29	12	1	10	13	8	77	69		1	7
2002	158	72	34	5	2	12	9	10	86	79	2	2	3
2001	164	95	37	5	2	11	19	1	20	69			3
2000	182	96	43	3	1	12	14		23	86		2	2
1999	230	116	62	3	1	17	14		19	114	2	6	5
1998	248	136	43	7	12	9	31	1	33	112	5	2	3
1997	273	173	83	9	11	12	21	1	36	100	2	3	3
1996	359	243	100	2	5	19	23	2	92	116	7	3	3
1995	330	222	138	9	4	20	24	3	24	108		3	5
평균	208	117	54	6	4	11	17	1	25	91	84	4	3

8 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번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표 2. 최근 10년간 군내 자살사고 현황(1997~2006년).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군 전체	사망자(명)	273	248	230	182	164	158	150	134	128	135
	자살자(명)	92	102	101	82	66	79	69	66	65	79
	자살률(%)	33.7	41.0	44.0	45.0	40.2	50.0	46.0	49.3	51	59
육군	사망자(명)	207	203	192	147	125	127	107	103	99	100
	자살자(명)	77	75	84	66	60	66	53	54	52	66
	자살률(%)	37.2	36.9	43.8	44.9	48.0	52.0	49.5	52.4	52.5	66.0

표 3. 사회와 육군의 자살사고 비율(10만 명당 자살자).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회	14.1	20.0	16.0	14.6	15.5	19.2	24.0	27.0	26.1	26.5
군내	12.8	12.5	14.0	11.0	10.0	11.0	8.8	8.8	8.5	10.8

표 4. 외국군 자살사고의 비율(2005년 통계)²⁾.

구 분	한국군	일본군	미육군	캐나다군
10만 명당 자살자(명)	8.5	41.3	17.6	19.3

표 5. 발생 원인별 육군 자살사고 현황³⁾.

연 도	부대관계(37%)									개인관계(63%)										
	계	소 계	간부질책	업무부담	선임병행포	처벌우려	훈련부적응	근무부적응	통제된생활	사적제재	소 계	가정환경	염세비관	허약체질	처벌우려	여자관계	채무고민	성격결함	자신결여	기 타
2006	66			4	5		2	14	3		38	7	10	2		9	3	6	1	
2005	51	16	1	2	4			9			35	10	9	3	2	5	3	3		
2004	66	8		4	2		1	1			58	12	11	6	1	9	6	5	6	1
2003	69	21	2	3	7		2	1	6		48	12	9	6	3	7	2	3	2	4
2002	79	33	5	8	10		2	2	4	2	46	17	3	4	3	11	3	5		
2001	66	29							22		7	37	13	9	4			1		
2000	82	26			1		3		15		7	56	23	12	3		13	2	2	1
1999	101	48					4		36		8	53	16	18	5	1	9	2	1	1
1998	102	37					7		26		4	65	33	12	10		8	2		
1997	92	32					4		25		3	60	26	6	13		13	1	1	
1996	103	38			1		5		27		5	65	21	17	8		17	2		
1995	100	37					7		29		1	63	27	12	12		12			
평균	81	30	3	4	4	4	2	18	3	5	52	18	11	6	2	10	3	3	3	2

나. 발생 원인별 현황

군내 자살사고의 경우 육군 장병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자살원인은 81명으로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표 5), 부대관계가 37%(평균 30명), 개인관계가 63%(평균

52명)로서, 개인관계로 인한 경우가 매우 높았으며, 개인관계로는 주로 가정환경, 염세비관, 여자관계, 허약체질(신병비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특징분석

군내 자살사고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자살 사고는 1998년, 2002년처럼 경제침체와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명경시풍조, 인내심 결여, 이기주의, 부대내 각종 악·폐습 등으로 인해 항상 발생 가능한 사고로 분석된다. 특히, 자살인원은 감소추세이지만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군 전체 사망자 248명 대비 자살자 102명으로 41% 차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아직도 사망사고에서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부대여건이 열악하여 이로 인한 군무이탈, 자살이 많았으나 최근 병영생활의 개방화와 군무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점차 부대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인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것이 많았다. 특히, 군생활 부적응으로 일등병·이등병의 인명경시풍조 및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어 힘든 현실 극복보다는 쉬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입대 전 지병 고민, 선입병 폭행 등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 및 자신감 결여 등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 부모 이혼 등 가정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자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병들의 가정환경, 이성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과 명량한 병영생활 조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현역의 경우 자살사고는 주로 영내에서 발생하고, 취침 시간, 휴식이나 휴가 기간 이용하였다. 상근역의 경우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자가, 아파트 등 영외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영내의 경우 창고, 훈련장, 휴게실 등 순이었으며, 영외의 경우 아파트 건물, 자가 및 민가, 산야 순이었다. 이는 자살이 영내보다는 지휘관리 감독이 소홀한 영외에서 휴가, 외출이나 일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과 후 장병들에 대한 지휘관리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자살방법으로는 의사(목매) 53.2%, 투신 20.9%, 총기 14.8%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사회와 달리 총기에 의한 자살이 높은 편으로 이는 총기를 상시 취급하는 군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총기의 상시 취급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과 총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성격별로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 80.7%, 외향적 성격이 19.3%로 내성적 성격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군범죄 총괄에서 보았듯이 전체 군범죄가 대체로 외향적인 성격자에

의한 범죄발생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자살사고의 경우에는 내성적인 성격 소유자가 높았다. 이는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성적인 성격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정신적 부담감, 고독감과 우울함을 더욱 잘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상파악을 통해 이러한 성격의 병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자살사고의 경우는 군복무기간이 3~6개월이 33.8%, 6개월~1년 미만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무이탈 사고와 마찬가지로 군 입대 후 전입 초기인 1년 미만 장병들이 부대 내·외적인 원인에 의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입초기 하계급자와 초급 간부에 대한 지휘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3. 군내 부검현황 분석

가. 부검 831예 분석현황(1971~1990년)⁴⁾(표 6)

군내에서의 부검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민주화와 더불어 부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부검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부검은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민주화의 척도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가능한 한 이러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군내에서 실시한 부검 831예의 분석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주로 어떠한 것이며,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경향 등을 분석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사고예방 측면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부검예의 분석은 연도, 월, 계절, 계급 및 사인(死因)과의 상호관계를 주로 분석한 결과로서, 부검은 해를 거듭할수록 1990년까지는 증가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연평균 82예를 차지하고, 1988년에는 121예로 가장 많았으며, 계절별로는 계절이 불분명한 35예를 제외한 26.4%가 봄에 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여름과 겨울이 각각 24.5%, 24.9%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방위가 월등히 많으며, 다음으로 일등병, 이등병, 상등병 순으로 나타났다. 사인은 중독사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다음으로 질식사, 손상 및 내인성 급사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년간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질식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손상, 내인성 급사 및 중독사의 순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과거 1970~1980년대에는 농촌에서 쉽게 구하기 쉬운 농약 등에 의한 중독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사(縊死, 목매, hanging)에 의한 질식사(窒息)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손상(대체로 구타와 관련된 사고)에 의한 사고가 1980년을 전후하여 가장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군내에서의 사고예방 노력 특히 구타사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인성 급사의 경우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6. 부검 831예 분석현황(1971~1990년).

구 분	내 용	비 고
부검 기간	1971년~1990년(20년)	
부검 인원	총 831예(연평균 82예)	1988년 121예
계절별	봄 26.4%, 여름 24.5%, 가을 24.2%, 겨울 24.9%	불분명 35예 제외
계급별 순서	방위, 일등병, 이등병, 상등병, 간부 순	
사인별	중독사, 질식사, 손상, 내인성 급사	

표 7. 군내 사망자 인원 대비 부검 인원 비율⁵⁾.

연도별	군내 사망자 인원	부검 인원	부검 비율(%)	검안 인원	조직 검사	혈흔 기타
2006	135	69	51.1	9	69	80
2005	128	59	46.1	10	30	172
2004	134	48	35.8	6	47	159
2003	150	68	45.3	7	32	202
2002	158	69	43.7	4	69	36
2001	164	51	31.1	1	52	40
2000	182	79	43.4	4	79	50
1999	230	69	30.0	13	70	59
1998	248	70	28.2	2	70	28
1997	273	61	22.3	8	63	31
1996	359	63	17.5	13	63	27
1995	330	79	23.9	6	2	21
1994	416	88	21.2	12	1	34
1993	343	62	18.1	18	3	31
1992	367	96	26.2	9	2	27
1991	355	109	30.7	5	1	40
1990	430	117	27.2	7	1	38
1989	453	108	23.8	9	11	31
1988	538	121	22.5	11	11	38
1987	619	115	18.6	20	11	33
1986	653	98	15.0	12	11	26
1985	721	82	11.4	11	6	27
평균	336	81	29	9	32	56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발행 과학수사연보 제5호(1985년~1990년)로부터 제8호(2005년)에 의한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내에서의 부검률 29%는 일반 민간인 부검률 11.7%보다는 거의 3배 정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 편으로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해 보면 적게는 17.5%로부터 46.1%를 차지하여 군내에서의 변사체에 대한 부검이 일반 민간인의 변사체에 대한 부검보다는 철저히 검안하고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는 사회민주화와 함께 군내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통계청 발표 ‘사망원인 통계연보’⁶⁾에 의하면 2004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인한 사망은 29,990건이다. 외인에 의한 사망은 30,567건이며, 사망원인 미상은 985건이다. 다시 말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에 의한 사망, 외인에 의한 사망 및 사망원인 미상의 사망이 적절한 부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망자 수라고 가정한다면, 61,542건의 사망이 법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찰측 비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면, 약 반수 정도가 변사발생 신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법의부검 통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⁷⁾ 2000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3,831건(서울 본소 2,770건, 남부본소 340건, 서부분소 613건, 중부분소 108건), 대구지역 294건(경북대 법의학교실)이었고, 제주 지역의 연평균 부검건수 70건과 지방 경찰공의가 수행하는 부검을 감안하여도 전국적으로 4,000건 내외의 법의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기준으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죽음 63,015건 중 실제 부검을 시행한 4,149건은 전체 부검대상 건수의 약 6.6%에 불과하고, 변사발생 신고 35,314명의 약 11.7%로 추정되므로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약 30% 정도를, 미국의 경우에는 약 55% 정도를 부검한다. 이는 결국 많은 사망이 적절한 사후 검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간인에 대한 검사의 주체인 검사(檢事)들은 과중한 업무량, 잦은 인사이동과 전담업무의 변동 등으로 연간 약 35,000여 명씩 발생하는 변사사건에 대하여 직접 검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6년간(1998~2003년) 우리나라 변사사건 발생 및 검사(檢事)의 직접 검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⁸⁾.

표 8. 검사(檢事)의 민간인 변사체 직접 검시 현황.

구 분	변사체 발생 인원(명)	검사 직접 검시 인원(명)	검사 직접 검시율(%)
2003	36,659	6,186	16.9
2002	34,016	5,795	17.6
2001	33,869	5,286	15.2
2000	35,314	4,149	11.8
1999	35,081	3,975	11.3
1998	38,400	4,903	12.8
평 균	35,557	5,049	14.3

위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변사사건 발생 인원은 연간 평균 약 35,55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경우는 평균 약 14.3%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사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 발생보고를 받고, 그 발생보고를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검시 지휘를 내려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집행(이를 대행검시라 한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공의는 수사기관과 함께 검안을 하지만 검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사는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법의학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나 사망 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검을 실시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검시절차에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는 있지만 검시절차를 총괄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또한 검시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도 없다.

4. 군내 사망사고 관련 민원제기 현황분석

가.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현황

국방부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1999년 2월 국방부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함)을 설치(의문사 처리과)하고 각 군은 참모총장 책임하에 재조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980년 이후 군의문사 관련 민원처리 대책반’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9.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현황.

구 분	민원접수	조사완료	조사진행/준비	회송/이첩
계(건)	305	235	65	5
국방부	5	2		3
육 군	193	154	35	2
해 군	95	68	27	
공 군	12	9	3	

※ 회송/이첩(5건) : 의문사위 1, 전경 2, 예비군 1, 교도관 1

표 10.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총 계(건)		목매 사망	교통 사고	수류탄 사망	투신 사망	음독 사망	산사태	소사	열차 추락	혈관질환 사망	※ 기타 사망
	계	기 사망										
계(건)	305	81	54	19	13	12	7	5	3	3	2	106
국방부	5		2			1						
육군	193	73	34	7	12	9	3	5	3	2	2	43
해군	9	6	12	12	1	2	3			1		58
공군	12	2	6				1					3

※ 기타 사망 : 병사, 폭발물사망, 익사, 추락사 등

표 11.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요구사항별 사망사고 현황.

구 분	계(건)	자살이유 불분명/명예회복	사고인정/순직처리	타살의혹 제기	사고사 주장	사망원인 규명	관련자 처벌	기타
계(건)	305	113	87	51	17	17	13	7
비율(%)	100	37	28	17	6	6	4	2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국방부 소속 특별조사단에 1차 접수된 민원은 166건이고, 2000년 4월 1일부터 2004년 7월 14일까지 2차 접수된 민원은 139건으로서 총 30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표 9), 또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도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군과 관련하여 2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조사되었다⁸⁾.

제기된 민원의 최초 수사기록상의 사망구분을 살펴보면, 자살자가 175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일반 사망자는 17명, 중과실로 인한 변사자는 45명

이었으며, 이미 순직처리가 된 인원도 2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즉 유가족이 최초 제기한 민원내용 중 사망원인이 자살인 경우(65% 차지)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부모의 “적어도 내 자식만은 절대로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는 믿음과 “그런 내 자식을 죽게 만든 것은 다 군대의 책임이다.”라는 원망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표 10)

사망 유형별로는 총기사망 81건을 비롯하여 목매사망이 54건, 수류탄 자폭사가 13건, 투신사망이 12건, 음독사망이 7건, 소사가 3건, 열차추락이 3건, 혈관질환 사망이 2건, 산사태가 5건, 교통사고가 19건, 기타 106건 등이며, 특히 1차 민원접수 당시 자살의 경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는 유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건이 109건 중 14건이나 있었다.

사망 연도별로는 50년대로부터 80년대 이전 사건이 144건이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60년대 47건, 70년대 32건, 80년대에는 65건, 90년대 107건, 2000년 이후는 53건으로 나타났다. 최초 재조사 방침상에는 조사 대상 사건을 80년대 이후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으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70년대 이전 사건을 포함하여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 하였다.

2) 특별조사단의 민원제기 요구사항별 사망사고 현황 (표 11)

민원인이 요구사항별 사망사고 현황으로는, 자살이유가 불분명하여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건이 113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사는 인정하나 순직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이 87건(28%), 타살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 51건(17%), 사고사를 주장하는 사건이 17건,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17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면, 타살의혹(17%)을 제기하는 내용보다 자살이유 불분명에 따른 명예회복(37%) 또는 순직처리(28%)해 달라는 민원이 약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이는 유가족이 군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즉 “내 자식이 설사 자살을 하였다라도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였고, 또 군대생활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으니 도의상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자의 경우 자살 자체를 불인정하고 재조사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거나, 자살은 인정하면서도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사망자나 변사자의 경우에도 순직 등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순직이 처리된 경우에도 명확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요구와 일부사건은 민원요지 없이 무조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다.

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원제기 현황 (표 12)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함)에 접수된 28건 가운데, 자살이유가 불분명하여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건은 21건(75%)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살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 1건(4%), 사고사를 주장하는 사건이 2건(7%), 기타(탈영 후 행방불명)가 4건(14%)으로 나타났다.

다.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접수한 민원 총 305건 중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65건과 회송 및 이첩처리한 5건을 제외한 235건을 재조사 결과, 최초로 병사, 변사, 일반사

및 자살사망이 순직으로 바뀐 사건이 46건, 변사에서 일반사, 자살에서 변사, 미상에서 변사로 바뀐 사건이 총 5건이었으며, 나머지 184건은 재조사 결과가 최초 수사기록과 동일하였다(표 13). 이러한 결과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접수된 28건 중, 인정사건은 5건, 진상규명불능 사건은 9건, 기각사건은 14건이었다⁸⁾.

이상에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군내에서 자살을 하는 장병들이 많다는 점과 민원을 제기하는 유가족들도 자살이라는 사실에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의혹과는 달리 재조사한 결과, 최초의 수사결과가 번복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여기에서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수사과정과 수사결과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둘째는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IV. 고 찰

I. 군내 변사체 검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군내 사망사고 처리제도의 문제점

가. 처리제도의 문제점

1) 현장훼손 문제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수사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 응급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당황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심지어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에 물청소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표 12. 의문사위의 민원제기 요구사항별 사망사고 현황.

구분	계(건)	자살이유 불분명/명예회복	사고인정/순직처리	타살의혹제기	사고사 주장	사망원인 규명	관련자 처벌	기타(탈영 후 행방 불명)
계(건)	28	21		1	2			4
비율(%)	100	75		4	7			14

표 13.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구분	민원 접수(건)	회송 / 이첩	조사 진행 / 준비	소계	순 직					변사 ↓ 일반사	자살 ↓ 변사	미상 ↓ 변사
					최초 와 동일	병사 ↓ 순직	변사 ↓ 순직	일반사 ↓ 순직	자살 ↓ 순직			
계(건)	305	5	65	235	184	26	12	6	2	2	2	1
국방부	5	2		2	2							
육군	193	2	35	156	146	1	2	2	2	2		1
해군	95		27	68	27	25	10	4			2	
공군	12		3	9	9							

민원인들의 의혹이 증폭되어 수사가 종결되어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사망한 장병의 소속부대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장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이다.

2) 비공개적인 수사관행

군사시설보호법상 군 관련 시설물은 대부분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 보호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의 구분)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됨은 물론 사진 촬영이나 묘사 등이 금지된다. 과거 사망사고 발생시 사인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인 현장검증에 있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유가족의 출입을 통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문제는 특히 1970~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강제 징집되어 사망한 사례와 관련성이 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은 군의 수사가 축소·조작·은폐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심지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여도 수긍하지 않는 사태를 낳기도 한다. 군에서는 1998년 김 훈 중위 사건 이후 국방부장관 지시로 유가족과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2002년 12월에는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이 제정되어 현재 유가족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과거 10~20년 전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한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불충분한 수사시간과 전문성 부족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공사상자치리규정(국방부 훈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 한 후 7일 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사망원인에 대하여 24시간 내에 조사하여 추정된 내용이 보고됨에 따라 이후 보강수사를 거치더라도 명확한 반대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보고내용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고, 더구나 7일 이내에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중압감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번사보다는 자살이라고 사망원인을 결정하기 쉬운 것이다.

현재 군내에 사망사고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감식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사의 주체가 주로 준사관과 부사관급의 수사관으로 편성되는데, 이들 중 이 화학 또는 생리학 등 법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체계적으로 전공한 사람은 드물고, 다만 소정의 양성교육기간을 거쳐

실무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에 대한 기법은 주로 경험을 통해 연마되는데, 사망사고 자체가 사단을 기준으로 1년에 2~3건 정도만 발생하므로 사망사고를 해결할 경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단서를 빠뜨릴 수도 있고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4) 수사기관의 비독립성

현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은 사고발생 부대에 소속되어 해당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단 헌병대장은 사단장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의문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권고안에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언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나.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군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유가족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사망사고 발생시 수사과정의 의구심 해소와, 둘째, 사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그것이다. 사망사고 발생시 수사상의 의구심 해소와 관련해서는 ①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먼저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점, ② 초동수사시 예단을 배제한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③ 군 수사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④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① 유족 보상금액의 현실화, ② 국립묘지 안장 등이다.

다. 보상제도의 문제점

현재 군내에서는 자살한 사병에 대하여 5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유가족들의 민원제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국방부훈령 제392호(2001. 3. 1부)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3월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중에 발생한 기타 비(非)전공사망자들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군생활도 못 감당해 자살한 놈에게 무슨 위로금을 주느냐’라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병사와 그 유가족의 입

장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군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2001년에 11건, 2002년에 10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다소 의심스럽고, 과연 유가족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2004년 현재 군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망사고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기준은 표 14와 같다.

모든 사망사고는 1차적으로 군내 수사기관의 조사절차를 마친 후에 전·사망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 및 자살 등으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에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일정한 보상 및 예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자의 경우에는 동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살을 포함한 기타 비전공사망에 대하여 사병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간부 자살의 경우에는 전혀 사망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서 유가족은 사망원인과 무관하게 군복무 중 사망한 자와의 보상 및 예우의 차별은 타당하지 않다고 끝

입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자살사고 사망원인에 대한 사법 절차적 의혹으로 인해 제기되는 명예회복 요구뿐만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순직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에우등지원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 그리고 국립묘지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자해자나 변사자는 안장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자나 변사자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함께 애국자의 반열에 들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만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적어도 군에 들어와 사망하였다면 국립묘지안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⁹⁾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활동하였던 제 1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무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 가운데 「군대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표 14. 현행 군내 사망사고 예우 및 보상기준(2004년 기준).

구 분	사망 구분	보 상 기 준	예 우
사 병	공무사망 (전사, 순직)	○보훈연금 → 매월 642,000원 ○사망보상금 → 중사 1호봉(939,500원) 보수월액 36배(33,822,000원) ※하사 이하는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2004년 기준 939,500원	○국가 유공자 인정 ○국립현충원 안장
	일반사망	○사망보상금 → 중사 1호봉(939,500원) 보수월액 12배(11,274,000원)	
	기타 비전공 사망 (자살자 등)	○사망위로금 → 1인당 500만원	
간 부	공무사망 (전사, 순직)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보훈연금 → 매월 642,000원 ○사망보상금 → 중사 1호봉(939,500원) 보수월액 36배 (33,822,000원) + 부가연금 (기준에 따라 2~70만원) ※하사 이하는 기본연금만 해당 : 매월 642,000원	○국가 유공자 인정 ○국립현충원 안장
	일반사망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기타 비전공 사망 (자살자 등)	○없음	

- ① 「군사시설보호법」상에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사망사건에 한하여 군 시설에 대한 유족의 접근이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권고 33).
- ② 사망사건을 진담하는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권고 34).
- ③ 군 검찰과 헌병 등 수사주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권고 35).
- ④ 징병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징병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점차 시행하도록 한다(권고 36).
- ⑤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을 필수화한다(권고 37).

마. 요구사항 분석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사과정의 공개와 보상의 현실화라고 하겠다. 이 문제를 군으로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기관은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이고 순발력있게 반응해가고 있다. 군대 또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요시하고 서비스영역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기억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의 변화속도보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과감히 판단하여 거부할 것과 수용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내 의문사 문제는 사망자 개인과 유가족으로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으로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 군내 사망사고 처리제도의 개선

1) 수사체계 개선

가) 현장보존과 유가족참여 보장

수사에 있어 현장은 ‘증거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현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함은 실제적 진실발견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장훼손에 대하여 형법상 번사체검시방해죄(제163조)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처벌하는 예는 드물고, 군내에서 현장을 훼손한 장병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2년 12월에 제정된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

에 규정된 것처럼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수사관 도착시까지 출입자를 통제하여 사고현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VTR이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 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휘관으로 하여금 현장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현장훼손의 유혹을 막기 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지휘책임 관행을 없애야 한다. 유가족들로 하여금 현장검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유가족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사결과는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특히 개인의 명예나 수사상 비밀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유가족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나)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지휘관은 엄격한 지휘책임의 관행상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를 가급적이면 사망자의 과실 또는 자살로 유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사망사고를 주로 담당하는 수사기관 또한 소속부대의 직할대로 편성되어 있다. 그 결과 만일 지휘관이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면 부하인 수사관은 그러한 지시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2002년 12월에 제정된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에 의하면 상급부대에서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사단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군단 헌병대에서, 군단에서 발생했다면 군사령부 헌병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행정규칙인 지침에만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급 헌병대라고 하여도 군의 정서상 계급 높은 지휘관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각군 본부 나아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수사기관을 편성하여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실시하는 수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또한 불필요한 보고채널을 줄어든게 하여 수사시간의 부족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수사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 교육강화

현재 군내에서 사망사고 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주로 준사관과 부사관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장교들은 수사지휘만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경험 많은 준사관과 부사관이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장교들은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사고(思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준사관과 부사관은 경험만 있고 지식이 부족한 반면, 정작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장교는 수사의 경험이 부족하여 결국 경험 많은 준사관과 부사관의 주장대로 경험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수사형태가 그대로 답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급 장교 때부터 수사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법률 지식과 법의학적 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등 재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군내에서의 과학수사 교육은 수사관 교육의 메카인 육군 종합행정학교 헌병학처 수사학과 주관으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헌병부대에서는 지휘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30일 현재 육군 헌병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헌병학처 과학수사(법의학) 교육현황은 표 15와 같다. 군사법경찰관인 육군 헌병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은 육군종합행정학교 수사학 교육시 과학수사 과목 교육시간에 법의학(최소한 8시간)으로부터 16시간을 비롯하여, 이화학, 독극물학, 지문 및 흔적감식, 총기화약폭발물, 화재사고, 교통사고, 항공기사고, 마약사고, 성문감식, 거짓말탐지검사, 몽타주, 형사사진

촬영기법, CCTV 관독, 현장감식 및 증거물수집, 감정물의뢰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 수사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연 2개 과정 80여 명씩의 현장감식반 과정(2주)을 신설하여 법의학을 비롯하여 최신 수사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고등군사반 과정(22주)을 이수한 후 바로 장교범죄수사반 과정(10주)에 입교하도록 하여 대위급 장교들에게 현장수사 지휘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고, 부사관 중에서 양성수사관으로 최초 선발된 부사관은 전원이 부사관범죄수사반 과정(20주)에 입교하여 과학수사 교육(법의학 등) 114시간을 포함하여 80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3급 수사관으로 임명되어 헌병수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군내 사망사고는 통상 1년에 250~300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단급 부대로 나눠 본다면 1년에 5~6건 정도 처리하는 실상이다. 그로 인하여 사단 또는 군단 헌병대에서는 몇 달 만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요령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장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군의 경우 육군

표 15. 헌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과학수사(법의학 포함) 교육현황.

구 분	과 정	대 상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2005년	2006년	2007년
장 교	수사지휘반	영관장교	2주 중 16시간	2주 중 5시간	2주 중 4시간
	고등군사반 장교	대위급 장교	22주 중 30시간	2006년 장교범죄수사반 신설	
	범죄수사반 (위관반)	대위급 장교	10주 중 74시간	10주 중 74시간	4주 중 40시간
준사관	장교 범죄수사반 (준사관반)	준사관	10주 중 78시간	10주 중 36시간	10주 중 38시간
부사관	중급반	중사 진급자	16주 중 35시간	16주 중 16시간	16주 중 16시간
	초급반	하사 임용자	12주 중 13시간	12주 중 12시간	12주 중 12시간
	범죄수사반	수사관으로 선발된 자	20주 중 114시간	20주 중 95시간	20주 중 95시간
	현장감식반 (2005년 신설)	현장감식 담당수사관	2주 중 66시간	2주 중 56시간	2주 중 64시간
사병	수사특기병반	수사특기병	4주 중 18시간	4주 중 8시간	4주 중 8시간

* 준사관은 임관 전에 이미 부사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수사단 소속 지구수사대에 현장감식팀을 운영하여 담당부대의 사망사고 등 강력사고를 지속적으로 전담케 하고 이들로 하여금 유가족에 대하여 수사내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과 유가족의 의혹 해소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라) 감정의 전문성 향상(현장 감식 전문가 양성)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군내 발생사고에 대하여도 감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한 군외(軍外) 대학병원이나 연구소 등 어느 기관에도 감정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현장 유류물에 대한 신속한 감정업무 처리와 비전문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군 수사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방부조사본부내에 독자적으로 과학수사연구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내에서 발생한 변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은 주로 위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 연구소의 감정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의문사와 관련된 유가족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물론 총기와 관련된 사고 등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분석하여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 현장검증의 객관성 향상

유가족들은 군인들만 모여 자기들끼리만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협조체제 유지’ 및 ‘전문가로 편성된 자문위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청과 공식적으로 협조하여, 어느 지역에서 민간인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광역수사대 및 지역경찰서 수사과와 수사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현장검증을 함께 하도록 하면 객관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난해하거나 민감한 강력 사망사고의 경우 지원을 의뢰하는 방안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2) 보상제도 개선

가) 국군묘역(國軍墓域) 설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들어와 죽은 영혼에게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떻게 자살한 자가 독립투사나 순직자와 똑같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은 둘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립묘지 내에 국가 유공자 묘역과 별도로 국군묘역을 만들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장병들을 안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등 지원에 관한법률’, ‘국립묘지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바를 분석한 결과 명예회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군 사망사고 처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나) 유족 보상금 문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군의 매우 발전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과연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니 적어도 장례비 차원에서 주는 의도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유가족들이 계속 데모와 시위를 하고 있으니 무마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유관 기관과 비교하여 본다면, 전투경찰대원이 자살한 경우에는 현재 경찰에서 사망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부대적인 원인이라면 사망위로금 외에도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현재의 사망위로금 외에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2. 군내 변사체 검시제도의 실태

군내에서의 검시제도의 목적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망사고 발생시 조사가 필요한 죽음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사 시에는 조사결과와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재 군내에서의 사망사고는 병사, 자살, 타살 및 사고사(재해사, 천재사 포함), 사인불상(원인불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군 헌병부대 및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국군의학연구소, 국군수도병원,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원인 및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즉 군내에서는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신분적 재판권)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

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죽음에 대한 조사의 책임을 검찰관(檢察官)이 맡고 있다. 변사신고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소속부대의 군의관으로 하여금 우선 시체에 대하여 검안을 하도록 요청하며, 현장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군의관의 시체검안서와 군사법경찰관의 변사 발생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찰관(檢察官)이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군의관에게 부검을 의뢰한다. 2005년 현재 군내 검시기관 및 인원구성 현황은 표 16과 같다. 2005년 현재 군내에서의 부검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군의관 2명이 연평균 80여명, 국군의학연구소 법의군의관 1명이 연평균 20여명을 각각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3. 군내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군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필요한 부검이 일부 유가족들의 부검 반대로 신속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검안과 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검안과 부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법의군의관의 확보가 곤란하여 부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대량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시설부족 및 인력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도 대두되고 있다.

가. 군사법원법상 검시대상

현행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신분적 재판권)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

지 않고, 더구나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미비한 검찰관이 변사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검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죽음, 심지어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실이 영원히 묻혀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군내에서는 검안(檢案)과 부검(剖檢)의 검시(檢屍)가 수사에 종속되어 초동수사에서 범죄로 인하거나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에 대해서만 부검이 실시되는 사법검시위주의 부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신의 장기 및 조직의 기증, 전염병의 역학적 검사, 직업병의 검토, 대량 재해시 개인식별 등 범죄와 무관한 공익적 기능은 다소 무시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선진국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2005년 6월 19일(일요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연천군 ○○사단 예하 ○○○GP내에서 김○○ 일병이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내무실 관물대에 있던 상병의 K-1 소총으로 25발들이 2탄창을 난사(44발 추정)하여, GP장 김○○ 중위 등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총기 사망사건 발생시 사망자 8명에 대하여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함으로써 수류탄과 총창에 의한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아직도 군내에서는 목을 매어 사망하여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내와 일반 사회 마찬가지로 화재사고나, 교통사고, 폭발물사고, 익사사고 등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나. 검시관여자의 검시능력

현행 군사법원법상 검시의 법률적 책임자는 검찰관(檢察

표 16. 군내 검시기관 및 인원구성 현황(2005년 현재).

구 분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군원주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인원 구성	법의군의관 2명, 부서관 1명, 군무원 1명	법의군의관 4명, 부서관 1명, 군무원 1명	법의군의관 1명
3개년 평균 부검 시행	80여 예	미실시	20여 예
기타	이화학감식, 지문/문서감식, 총기화재감식, 형사사진, 거짓말탐지검사 등	일반 병원업무 중 부검업무도 담당하나, 현재는 부검 미실시	일반업무 중 부검업무만 담당 (2006년부터 부검미실시)

官)이지만, 실제 검시의 집행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변사체 발생시 일반적인 시체 검안은 소속부대의 일반군의관이 실시하며, 부검허가는 군검찰관이 군사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 군판사의 발부영장에 의하여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군의관이 지역 군병원으로 출장을 가서 부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변사체 검시과정에 서로 다른 직종의 다수인이 검시에 관여한다. 그러나 검찰관을 포함하여, 군사법경찰관, 군판사 등 검시관여자들은 변사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의군의관의 경우에는 임관되기 전에 의과대학에서 법의병리학이나 법의학 전공을 기피하고 부검을 거의 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관되어 이들 중 2명 정도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 법의군의관으로 배치(의무복무 기간인 3년간 근무)되어 군내에서 발생하는 변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검소견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한편 법의군의관은 시체를 검안하고 해부하여 사인을 규명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법의군의관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법의군의관을 제외한 국군원주병원과 국군의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법의병리전공 군의관은 사인규명에 필요한 부검을 회피하고 실제로는 부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군내 부검기관의 실태

군내에서의 검시제도는 일반 검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사과 부검이 별도로 실시되는 이원적인 제도이다. 즉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판단하고 부검소견을 작성하는 일은 법의군의관의 역할이고, 현장에 대한 검시조사와 사망의 증거, 현장 유류물 등 각종 증거물 수집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체의 의학적 검사, 즉 검시(檢屍)를 담당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검안과 부검을 실시하여야 비로소 공정하고 정확한 검시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내의 경우 변사사건,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수사를 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군의관이 부검을 실시하는 등 부검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부검기관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검안과 부검을 하게 되므로,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시받을 경우 검안과 부검결과는 실제적 진실과 멀어질 수도 있게 되며,

수사기관에 사실상 종속된 기관에 의해 검안과 부검이 이루어짐으로써 검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검시결과가 유가족의 신뢰를 잃어 의문사로 꼬리를 물게 되어 민원제기의 원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안과 부검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안군의관과 법의군의관이 다른 검시 관련기관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변사체 발생 사고현장에 직접 신속하게 출동하여 독자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검안과 부검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공권력이 개입된 사망의 경우에는 검시결과가 어떠한지 간에 이러한 조직상의 문제만으로도 검시결과에 대한 불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V. 요약

I. 군내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의 방향

외국 검시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검시관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검시절차의 통합성 및 복잡성, 검시기관의 독립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대륙법계 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단점들이라 할 수 없다^{7),10),11)}. 앞으로 군내에서의 검시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합하며 재정적 부담 및 국민 정서라는 현실을 전제로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의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외인사와 사인불명인 죽음 등 검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망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검시의 대상과 변사의 개념을 명문화한다.

둘째, 변사체 발생시 군사법경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보된 부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의병리(법의학)전공 법의군의관을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초기수사부터 시체의 의학적 검사와 검시관련 각종 정보의 독자적인 수집과 부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셋째, 현재 군 수사기관에 예속되어 운용되고 있는 부검기관인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별도의 기관에 속한 법의군의관으로 하여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화된 부검을 실시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넷째, 검시관여자인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군의관, 군관사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의학교육과 부검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부여해 준다.

다섯째,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제도의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육군수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수사대 예하 수사대에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의 법의군의관을 1명씩 배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평소에는 소속 수사관에게 법의학교육과 실무사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응급의료체계처럼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중부, 남부, 서부, 동부) 법의학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부검을 실시한다면 신속한 부검과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유가족의 부검에 대한 신뢰를 다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입법 공청회에서는 검시 전문가로 하여금 검시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시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검시관의 직무범위와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 및 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되고 있다⁸⁾.

2. 군사법원법 규정 정비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의 조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찰관의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망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관 역시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고되거나 직접 인지한 변사사건이 검시를 필요로 하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검시하여야 할 사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관 자신의 판단과 무관하게 반드시 검시를 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검찰 업무처리 지침집 제14절 변사사건 처리지침’과 ‘수사업무 종합지침서 제3절 변사사건 처리 제3조(변사자의 검시)’도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은폐될 위험성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시 대상인 사망의 유형을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의군의관의 검안과 부검규정 정비

‘군사법원법 제264조’는 검찰관의 검시 의무만을 규정할 뿐 검시과정에 필요한 법의군의관의 참여 등 검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사망사고 발생초기 현장조사에서부터 법의학적 조사가 필요한 변사체 조사에 법의군의관의 참여 없이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군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주도하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속부대 일반 군의관이 검안을 한 시체검안서에 의거하여 검찰관이 부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잘못된 조사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법의군의관이 변사체 검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군사법경찰관이나 검찰관의 요청으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법의군의관은 군사법경찰관이 제공해주는 수사자료를 참작하여 부검에 대한 소견을 내리게 되므로 부검결과가 잘못될 위험성이 남게 된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군의관이 처음부터 검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구대별로 지속적으로 법의학적 훈련을 받은 법의군의관을 확보하여 이들을 초기 현장조사부터 검시에 참여하게 하여 변사체에 대한 검안을 하도록 하고, 부검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들의 전문적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가족의 요청시에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의 부검의에게 부검촉탁을 실시하여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군내 부검기관의 독립화

변사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검기관이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 수사기관이 군부대 내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부검을 실시한다면, 사망에 대한 조사과정이 공정하기 어렵고 조사결과 역시 신뢰받기 어렵다. 설령 부검과정이 공정하고 부검결과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부검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부검결과는 유가족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

다. 군내에서 변사체 발생시 부검이 필요하다면 부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군의관에게 부검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결코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 못한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군의관이 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법의학적 심판인 부검 업무를 행하는 것은 자칫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적어도 부검 업무만큼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 변사체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소속 아래 실질적인 인사와 예산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기능을 분리하여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검업무를 수행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서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을 확대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의감정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⁷⁾.

위 방안 중 현재 형해화되어 있는 의과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을 실질화하고 검시업무에 필요한 법의학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 및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앞으로 공판중심주의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법의학 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이곳에서 종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행해오던 모든 부검업무가 선진국형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내의 사망사고를 줄여 지휘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인 육군종합행정학교 헌병학처에서는 전군 수사관을 대상으로 법의학을 비롯하여 최신의 현장감식 수사기법 등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육군수사단 소속의 지구수사대 현장감식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과학수사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초동수사로 완벽하게 수사를 실시하고, 사인규명을 위하여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군의관에게 촉탁하여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5. 결 론

군내에서의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사망사고를 예방하여 장병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범죄와 사망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절차에 의하여 완벽한 수사

종결로 한 사람이라도 민원제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군내의 실정에 적합한 검시제도를 운영하여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원형 그대로 철저히 보존함은 물론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현장감식 전문가에 의한 완벽한 증거를 입증시켜 공정성을 가지게 하며, 신속한 보고체계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위하여 국방부 직할로 수사기관을 편성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도모하며, 자살 등으로 사망한 사고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립묘지내에 국가유공자 묘역과는 별도의 국군묘역 설치와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법치국가의 사명이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장병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병의 사망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하여 사망자 개인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어야 하며, 그 사망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내의 검시제도하에서는 일정한 사망에 대하여 조사를 강제하는 명확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사망사고가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될 우려가 있고, 조사가 행하여지더라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검시관여자의 참여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현행 사망사고 처리 절차와 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성 및 책임성과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는 검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망사고의 유형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반드시 법의학전문가인 법의군의관이 사망사고 현장에 군사법경찰관과 함께 신속히 출동하여 전 수사과정과 현장검증을 참여하게 함은 물론, 검시의 판단 여부를 부여해 주고, 특히 변사체 부검업무는 공정하고 독립된 부검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등 검시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된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법의학교육을 내실화하며, 법의병리전문주의제도를 도입 신설함

은 물론 법과대학에서도 법의학교육을 시키는 등 법의학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법의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군내 사망사고 처리절차와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단한 노력을 결실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인식아래 그 구체적인 군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사신고의 누락을 막고 검찰관(檢察官)의 부검시행 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① 사인불명의 사망, ② 범죄행위 등 폭력에 의한 사망, ③ 외상 및 외부원인에 의한 사망, ④ 중독사, ⑤ 작업장 등 현장에서의 사망, ⑥ 군병원에서 시술 중 사망, ⑦ 교도소, 영창, 부대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 ⑧ 기타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을 변사의 대상과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사망의 유형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64조’ 또는 관련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법의군의관이 반드시 변사체 현장에 직접 신속하게 출동하여 수사관과 함께 초동 조사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군검찰 업무처리 지침집 제14절 변사사건 처리지침’ 상의 검시와 관련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군의관에 의한 변사체확인과 필요시 부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어디서든지 사건 현장에 법의군의관이 출동하여 적법한 법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부 졸업 후 법의학 교육의 프로그램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검증과 체계적인 법의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의학은 정부의 모든 복지서비스와 같은 맥락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수와 전문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일선 수사관, 군사법경찰관, 응급구조요원, 장례전문사, 수사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일반 군의관 등을 위한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의 법의학 교육을 위하여 여름방학 계절 수업, 교양강좌의 실시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각종 표준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법의학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법의학 실무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죽음에 대한 조사의 복지정책 향상을 위하여, 법의학교수는 수사관, 군사법경찰관, 화학

검사자, 법과학 검사실의 책임자 및 법의학청학자, 법인류학자, 법치의학자 등 법의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연구를 하고 하나의 통일된 학회를 만들어 검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

다섯째, 군내에서의 범죄와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제도를 개선하고 검시의 제도적 구현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실시하는 구성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발전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공청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사이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보건의무계열 전공 일반직 112명을 3년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여섯째, 개선방안을 내어 놓는 정부 각 기관이 앞 다투어 개선방안을 내어 놓고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한편 개선방안 마련 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시제도의 개선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도의 개선이 지연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군내의 검시제도의 기능적인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각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검시제도 개선방안이 먼저 도출된다면 일반 검시제도의 개선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검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마음먹기보다는 검시제도에 소요되는 자원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점에서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나아가 법의병리학과와 개설이나 행정검시의 강화 등 검시 자원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도 운영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기 어렵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이를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¹²⁾ 본 연구가 이러한 발전방안을 마련함에 작은 도움이 되고 검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검시제도가 계속 발전해 가기를 기대 본다.

참고문헌

1. 국방부 인사복지국 통계자료, 2005~2006.
2. 통계청 및 육군본부 자료, 2007.
3. 국방부 인사복지국 통계자료, 2005~2006.
4. 과학수사연보 제5호(1985~1990),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136쪽, 1991.
5.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연보 5~8호(1985~2005년) 종합, 2005.
6. <http://wwwsearch.nso.go.kr/search/search2/kosis/Search개.jsp>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4.
7. 곽정식의 5인 공저,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대한법의학회, 2002.7., 6쪽 참조.
8. 대검찰청 홈페이지 홍보관 검찰활동소개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 실적분석:
<http://www.spo.go.kr/user.tdf?chungcd=01000000&catmenu=040101&a=user.pm.PmApp&c=10>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1차), 2003.
10. 박희경, 대륙법 검시제도 고찰 -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교분석 -, 인권과 정의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 임규옥외 5명, 한국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2. 유시민,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2005.